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에서 친환경 화물자동차로의 교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 화물운송업자의 일부 양도 특례 기간을 일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폐차시 톤급범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물자동차의 대상을 신규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친환경 화물차에서 모든 친환경 화물차 및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하는 경우까지 확대(안 제52조의3제1항제4호라목)
- 나. 법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보는 것으로 보는 자 중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양도 특례를 1년 연장하고, 친환경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2년을 추가 연장(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환경부, 산업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1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해당 차량으로 대체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에 관한 특례) 법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별표 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 및 국토교통부령 제630호 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

유한 화물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100분의 20(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기준으로 하되, 보유대수가 2대인 경우에는 1대를 말한다) 이상을 제52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대체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기한·절차·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범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이 경우 대폐차 범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제한 없음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해당 차량으로 대폐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 없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